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묘지 안장 후 안장자격 변경 시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8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묘지 안장 후 안장자격 변경 시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2
2. 누락 조문 정비	6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정부
2. 제출일 : 2024. 12. 18.
3. 회부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립묘지 안장 후 안장자격 변경 시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① (생략)	제7조(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② ----- -----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신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

제16조(안장비용) ① (생략)	<u>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제16조(안장비용)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② ----- ----- -----.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u>

□ 현행법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다만,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²⁾

-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 2)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에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 사람이 향후 유해가 발굴된 경우 예외적으로 국립묘지간 이장을 허용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경우 1인이 사실상 2개의 안장시설을 차지하게 되어 국립묘지 안장여력 부족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³⁾⁴⁾ 대도시권 등 특정 국립묘지로 이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권역별 국립묘지 건립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국립묘지 간 이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국립현충원(2곳), 국립민주묘지(3곳), 국립호국원(6곳) 및 국립신암선열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안장 대상자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현황>

구 분	안 장 대 상
국립현충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의 된 사람,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장성급 장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등
국립호국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민주묘지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 사망자·부상자·기타희생자

자료: 국가보훈부

- ☐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이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3) 우리나라 전통적 장례문화 특성 상, 한번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공묘·공실 발생이 우려

4) 2024년말 기준 공묘·공실은 현충원이 427기, 호국원이 645기임.

것으로, 국립묘지에 최초 안장될 당시에는 해당 국립묘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국립묘지 안장선택권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 안장대상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참전유공자가 호국원 안장 이후 무공훈장을 수여 받아 현충원 안장자격이 생긴 경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음.

<안장자격 변경 사례>

- ① 참전유공자가 호국원 안장 이후 무공훈장 수여받아 현충원 안장자격이 생긴 경우
- ② 참전유공자가 호국원 안장 이후 전사사실이 확인되어 현충원 안장자격이 생긴 경우
- ③ 참전유공자가 호국원 안장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어 현충원 안장자격이 생긴 경우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이장 시 이장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장하는 경우 이장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⁵⁾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⁶⁾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6) 운구·화장 등 이장에 따른 비용만 유족이 부담하며,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비용(유골함, 비석, 명패 등)은 국가가 부담

2. 누락 조문 정비

□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개정(법률 제19950호, 2023.7.18. 공포·시행 및 법률 제20356호, 2024.2.27.공포, 2025.2.28.시행) 시 누락된 이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7)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됨.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나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행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법률 제19950호(2023.7.18. 공포·시행)는 제5조제4항(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제5항·제6항이 각각 제6항·제7항으로 이동되었으나,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되는 개정이 누락됨.
- 법률 제20356호(2024.2.27.공포, 2025.2.28.시행)는 제5조제5항4의2호(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를 신설하였으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신설 조항 반영이 누락됨.⁸⁾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	② ----- ----- ----- ----- -----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8)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생전에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 목·파목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 람 나.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 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할 것 ③·④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제 7항----- ----- ----- 나. (현행과 같음) 3. ----- ----- ----- 제5조제5항제4호의2 및 제5호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2024.12.31. 현재)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비고
합계			468,972	368,083	100,889	
현충원	서울	봉안묘	54,810	54,758	52	<잔여묘역 52> 임정요인 15 경찰 37
		봉안당	53,420	33,402	20,018	
	대전	봉안묘	100,340	100,159	181	<잔여묘역 181> 독립유공자12 의사상자46 독도의용수비대7 소방공무원98 순직공무원14
		봉안당	49,000	5,854	43,146	
호국원	영천	봉안묘	19,864	19,864	-	봉안묘 만장
		봉안당	33,809	33,809	-	2.5만기 확충예정 (‘25년 상반기)
	임실	봉안묘	16,304	16,304	-	봉안묘 만장
		봉안당	20,608	19,300	1,308	2만기 확충예정 (‘25년 상반기)
	이천		50,002	50,002	-	5만기 확충예정 (‘25년 상반기)
	산청		20,010	10,278	9,732	
	괴산		47,585	22,735	24,850	
민주묘지	4·19		1,132	543	589	
	3·15		122	58	64	
	5·18		1,966	1,017	949	